

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집회일시 : 2024년 4월 16일(화) 오전 10시
2. 집회장소 : 고창군의회 본회의장

2024년 4월 1일

고 창 군 의 회 의 장

